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3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186,11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redacted]공사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B 내 [redacted]시 C 공장용지 5,5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30,430,000원에 분양받아 2008. 10. 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9. 4.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13. [redacted]군으로부터 건축면적 1,362.46㎡, 연면적 2,655㎡의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0. 9. 10. 공사에 착공하였고,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2층 공장 가동, 나동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26.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0.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2016. 10. 1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186,114,54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1. 3. 28.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관한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0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8. 10. 29.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에 착수하여 2011. 3. 28.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추징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① 원고가 2011. 2. 1.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1. 27.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의료기기제조품목 신고를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장은 의수족 및 보조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큰 기계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2011. 5.경 제조 현황 사진에 의하면 줄, 오븐기, 진공성형기 등 위 기구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완공 당시 직원들을 신규채용하였으나 위 직원들이 청주 근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공장의 전기요금으로 2011. 2.경 5,552,060원, 2011. 3. 분 2,335,320원이 부과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공장을 완공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존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고, 이들의 인건비 및 이 사건 공장의 매출액을 기존 사업장의 회계로 계산하였던 점, ⑥ 피고가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16. 9. 28. 이 사건 공장이 공실 상태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장을 가동하다가 적자 끝에 경영상 판단으로 경영을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공실로 방치된 것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분사유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소극적으로 방치한 것만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자로 인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매년 노동력 부족과 손실 발생을 감수하여서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적자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에게 가혹한 요구이고, 원고는 8년여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도 대출이자를 지출하여야 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이 원고는 공장의 영업을 하다가 적자 끝에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영업을 중단한 것이므로, 공장을 신축하는 시늉만 하거나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다른 사례와 구별하여야 하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5 내지 24호증, 갑 제26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1) 원고는 2011. 2. 1.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3. 28.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1. 9. 28. 주식회사 E과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GMP) 및 제조업, 품목신고'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8. F연구원과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및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2. 1. 2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2012. 1. 27. 의료기기 제조품목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0. 및 2012. 10. 10. G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인하는 광고를 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H, I, J, K, L, M, N 등 직원 7명이 신규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L은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2011. 11.경 입사하였다가 2012.

---

1) 이와 관련 정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만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사용승인만 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 규정의 목적에 반하는 점(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1133 판결 참조),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230조 단서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장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여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4.경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49호증), 소외 O, P, Q, R은 2011. 3.경 [redacted]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6.경부터는 이 사건 공장을 왕래하며 업무를 하였는데, 2012.경부터 신규 직원들이 [redacted]에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근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5호증 내지 갑 제47호증).

원고의 직원이 아닌,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는 T 역시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하였고, 당시 직원들 10여 명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50호증).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의 구인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 후 직원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반증(反證)으로 제시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전기요금이 꾸준히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의 2011. 5.경 제조시설 현황(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수족 및 보조기를 생산하기 위한 줄, 오븐기, 진공성형기 등의 기계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한편 피고가 2016. 9. 28. 방문조사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공장이 공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을 제3호증), 이는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된 2011. 3.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사정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당시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비록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업장 가입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이 사건 공장의 사업장에 관한 표준재무제표증명(갑 제23호증의 1 내지 갑 제23호증의 5)에 의할 때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건 공장의 상품재고액, 매출액, 급여와 임금 및 제수당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redacted] 사업장과 이 사건 공장의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의 매출액 및 인건비를 서울 사업장의 회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 보론(補論)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에 관하여 추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9. 4. 17.부터 3년 내인 2010. 8. 13.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 9. 10.부터 공사에 착공한 다음 2011. 3. 28.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으므로(판결문 2쪽 참조),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

가)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그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던 사실(판결문 2쪽, 3쪽 참조), 위 통지에 첨부된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중 추징사유란에도 위 두 가지 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록 위 두 사유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밑줄이 그어져 있으나, 이는 주된 사유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 31. 선고 2017두64903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21890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적어도 2012.경까지 실제로 용도에 부합하게 영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다른 용도 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참고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520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은 '건물이 준공되어 영업을 위한 사용을 개시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건물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방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실제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공장을 사용한 다음 가동을 중단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구별되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던 이상, 이를 '소극적 방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다가 경영난 등으로 이를 중단하였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이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우정

판사 김주식

판사 이정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별지

부과처분

1. 토지([redacted]시 C 공장용지 5,553.4㎡)에 대한 취득세 등

가. 취득세(단위: 원)

구분	감면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778일)	합계
취득세	16,018,030	3,203,600	8,544,010	27,765,640
농어촌특별세 (본세)	1,601,800	320,360	854,400	2,776,560
계	17,619,830	3,523,960	9,398,410	30,542,200

나. 등록세(단위: 원)

구분	감면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록세 20%, 지방교육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778일)	합계
등록세	16,018,030	3,203,600	8,544,010	27,765,640
지방교육세	3,203,600	320,360	1,708,800	5,232,760
계	19,221,630	3,523,960	10,252,810	32,998,400

다. 재산세 등(단위: 원)

년도	과세구분	공시지가	과세표준 (공시지가×면적×70%)	재산세	교육세	부과세액
2009	종합합산	170,000	660,854,600	3,054,270	610,850	3,665,120
2010	종합합산	170,000	660,854,600	3,054,270	610,850	3,665,120
2011	분리과세	175,000	680,291,500	1,360,590	272,110	1,632,700
2012	분리과세	175,000	680,291,500	1,360,590	272,110	1,632,700
2013	분리과세	177,000	688,066,260	1,376,130	275,220	1,651,350
합계				10,205,850	2,041,140	12,246,9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2. 건물{[redacted]시 [redacted]구 C 가, 나동(도로명주소: [redacted]시 [redacted]구 U) 건축면적 1,362.46㎡, 연면적 2,655.5㎡}에 대한 취득세 등

가. 취득세(단위: 원)

구분	감면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778일)	합계
취득세	60,143,200	12,028,640	16,166,490	88,338,330
농어촌특별세 (본세)	4,295,940	859,180	1,154,740	6,309,860
지방교육세	3,436,750		923,790	4,360,540
계	67,875,890	12,887,820	18,245,020	99,008,730

나. 재산세 등(단위: 원)

년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70%)	재산세	교육세	부과세액
2011	1,050,207,000	735,144,900	1,837,860	367,570	2,205,430
2012	1,071,531,000	750,071,700	1,875,180	375,030	2,250,210
2013	1,055,538,000	738,876,600	1,847,190	369,430	2,216,620
2014	1,116,844,500	781,791,150	1,954,480	390,890	2,345,370
2015	1,095,520,500	766,864,350	1,917,160	383,430	2,300,590
합계			9,431,870	1,886,350	11,318,220

3. 합계 세액

총 186,114,540(원) = 30,542,200 + 32,998,400 + 12,246,990 + 99,008,730 + 11,318,22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